

도로구역결정(변경)의 고시

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07년 7월 05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내용

구분	종류	노선명	구 간	총연장	중요 경과지	구역결정 (변경)이유	비고
당초	지방도	1089호 (신등~부황)	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855-2 ~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337-1	L=240.5m	-	-	
변경	지방도	1089호 (신등~부황)	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855-2 ~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337-1	L=240.5m	-	교차로개선	

2. 사업시행자 : 경상남도지사(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)

3. 사업시행기간 : 2007. 6 ~ 2007. 12

4. 공람기간 및 장소

o 기간 : 고시일로부터 1개월

o 장소 :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, 합천군 건설과, 대병면사무소

5. 위치도 : 붙임

6. 편입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: 붙임